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소관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제정 2020.11.16 특허청고시 제2020-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

1. 진단기관의 기술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별로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상시고용 인력으로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별표3)의 인력을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보유할 것
2. 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3.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
4.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진단기관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등) ①특허청장은 매년 진단기관의 수 및 진단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단 기술분야별로 진단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2.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진단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 (또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5. 보안현황 점검표(별표1)
 6.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전문인력의 현황
 - 가. 성명, 경력 및 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나.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 다. 전문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7.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산업재산권진단 유사사업 실적, 진단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 ③특허청장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 제4조(심의위원회)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재산권 진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 개최시마다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④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 원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정) ① 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았으면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2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1. 제2조에 규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2.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진단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서 교부 등) ①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산업재산권진단기관지정서(별지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기관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 및 기관운영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 전략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단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조의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확인결과, 시행령 제19조의2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고 및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기

관은 향후 1년간 진단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없다.

제8조(실적보고)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진단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단기관의 발전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0-31호, 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보안현황 점검표

보안현황 점검표

기관명 :
 조사일: 20 .
 조사자 :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미흡
관 리 적 보 안 체 계	1-01 보안 조직(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1-02 보안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1-03 보안 내규를 수립하였는가?			
	1-04 보안 내규에 대해 CEO의 결재를 받았는가?			
	1-05 보안 내규를 실현하기 위한 하부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06 보안 내규·지침 등이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되고 시행되고 있는가?			
	1-07 진단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및 퇴직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가?			
	1-08 문서화된 보안 교육 및 훈련 계획이 존재하는가?			
	1-09 보안 교육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가?			
	1-10 보안 교육은 전 임직원을 포함하는가?			
	1-11 보안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교육이 실시되는가?			
	1-12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가?			
	1-13 보안 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자의 처벌규정이 있는가?			
	1-14 보안 사고 유형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있는가?			

구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물리적 보안 체계	2-01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제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가?			
	2-02	제한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치(지문인식 또는 디지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2-03	제한구역 및 작업장에 대한 출입자 기록부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2-04	작업장은 재해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가?			
	2-05	작업장에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2-06	전용사무실내 문서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기술적 보안 체계	3-01	침입차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02	침입차단시스템의 전산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비인가 접근의 완전 차단 등)			
	3-03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네트워크 경로가 존재하는가?			
	3-04	침입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05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전담자가 있는가?			
	3-06	PC별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 대장이 기록·관리되고 있는가?			
	3-07	PC에 바이러스 방역 SW가 설치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			
	3-08	PC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가?			
	3-09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점검항목 평가방법

- 보안현황 조사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의 하나로 평가하며,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는 경우 보안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양호”는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완전한 경우, “보통”은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불완전하나 보완이 용이한 경우, “미흡”은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없거나 보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별표2] 진단기관의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진단분야	세부기술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전력기술,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등
기계·금속	일반기계, 건설, 토목, 운송·원동장치, 자동차, 재료금속,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계측기술 등
화학·생명	화학공정·장치, 약품화학, 환경기술, 고분자 섬유, 소재, 농림수산, 의료생명등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금융결제서비스,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영업방법(BM)*, 마케팅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 등

* 사업 아이디어 등을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별표3] 진단기관의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등급	자격 요건	비고
책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행실적 5건 이상 	IP 정보 조사분석 경력 3년 이상 및 수행실적 5건 이상 필수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수습을 마친자로서,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4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행실적 3건 이상 	IP 정보 조사분석 경력 2년 이상 및 수행실적 3건 이상 필수

※ IP정보조사분석이란 특허기술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일반 기업 특허맵 등 포함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기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진단 기술분야

「발명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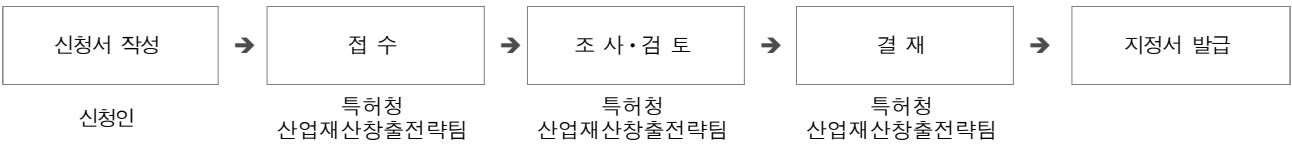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명진흥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발명진흥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처 리 절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진단기술분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발명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허청장

직인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실적보고서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추진실적
 - 건수, 금액, 진단분야 등

- 성과
 - 우수사례 등

- 진단기관의 일반현황
 - 전문인력 현황, 시설 및 보안체계 현황 등